

정부, 수출용 원료돈의 사육 및 출하 조절 지침 제정, 고시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원활한 돈육 수출을 통한 돈육의 수급조절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외국으로 수출하는 원료돈의 사육 및 출하조절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수출 검역업무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일본 수출돈육 유해 잔류물질 검사지침」을 고시한바 있다(월간양돈 89년 1월호 참고).

정부가 고시한 「수출용 원료돈의 사육 및 출하조절 지침」은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농림수산부 고시 제89-6호

돈육의 수급조절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출하는 원료돈의 사육 및 출하조절에 관한 사항을 축산법 제13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 1. 19

농림수산부장관

수출용 원료돈의 사육 및 출하조절 지침

제1조(목적) 외국으로 수출하는 원료돈의 사육 및 출하조절에 관한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을 통한 돈육의 수급조절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돈농가”라 함은 축산법 제13조의 2 제13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로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원료돈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출업자”라 함은 외국으로 돈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유해잔류물질”이라 함은 항생제, 항균제, 중금속, 호르몬제 등이 돈육에 잔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사양) 양돈농가는 외국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돼지를 사육할 경우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첨가 사용기준에 따라 배합사료공장에서 생산한 배합사료를 축종별, 사육 시기별로 급여 사육하여야 하며, 특히 비육후기(출하 30일전)에는 비육후기 사료외의 다른 사료는 일체 급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돼지 출하 20일전부터는 항생제, 항균제 및 구충제 등을 주사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출하) ① 양돈농가는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한 돼지를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출하하여야 한다.

② 양돈농가가 수출업자에게 돼지를 출하할 때에는 사료급여 상황, 투약 상황 및 유해 잔류물질 검출에 따른 각서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감축명령) ①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양돈농가가 제3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출원료돈에 대한 국내 또는 수출대상국 검사기관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범위내에 수출원료돈의 출하를 제한함과 동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출원료돈 공급 두수의 20%에 해당하는 모돈을 감축토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감축후의 모돈 두수는 감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증식할 수 없다.

제6조(사육 및 출하상황) 양돈농가는 수출할 예정으로 있는 돼지에 대하여 사료급여 상황, 항생제, 항균제, 구충제, 호르몬제 등의 투여상황 및 수출국 또는 수출업자별 출하 상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